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03 MAY 2018  
/o.

## 판 결

사 건 2017고단1201 사기

피 고 인 김상민 (880620-1010717), 회사원  
주거 익산시 동천로1길 7, 302동 402호 (동산여울휴먼시아)  
등록기준지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582

검 사 박정선(기소), 김현경(공판)

판 결 선 고 2018. 4. 27.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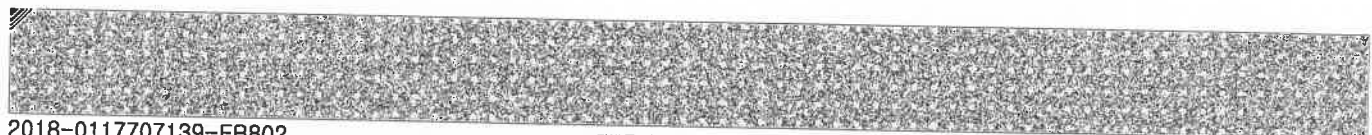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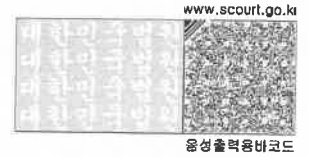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 유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윤세영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나 2016. 3.경부터 2017. 1.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품권 구입대금이나 기프트콘을 결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 1.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 6. 서울 신림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내가 따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해줄테니 내 계좌로 172,300원을 넣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사업 관련 결제가 늦어져서 돈이 묶여 있어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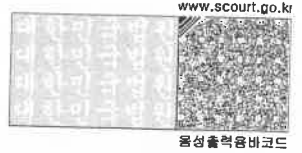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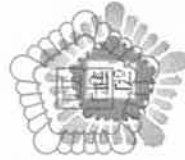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따로 하는 사업이나 그와 관련하여 묶인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당시 준비 중이던 호프집 개업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호프집 개업 관련하여 문제가 많아 진행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225-47-\*\*\*\*\*)로 172,3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32,391,950원을 송금 받았다.

## 2. 모바일 상품권 및 기프트콘 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티월드로 들어가서 내가 알려주는대로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해 달라. 결제 금액은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상품권 대금이나 기프트콘을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1.경 주식회사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사이트에서 10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24회에 걸쳐 합계 2,70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0회에 걸쳐 합계 35,095,0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윤세영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1. 고소장

##### 1. 본인금융거래(출금), 소액결제 이용내역, 콘텐츠이용 내역

##### 1. 카카오톡 메시지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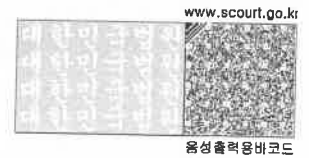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매달 702,800원씩 분할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속여 장기간 수신회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동일한 방법으로 교제 중인 여성을 기망하여 2,534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한홍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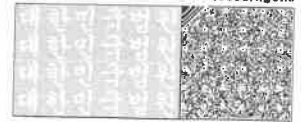


### 범죄일람표 (1)

연번	법행일시	법행방법	피해금액(원)
1	2016/04/06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업 관련 결제가 늦어져 돈이 묶여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225-47-*****)로 송금 받음	172,300
2	2016/04/06	상동	223,500
3	2016/04/15	상동	200,000
4	2016/04/16	상동	200,000
5	2016/04/17	상동	300,000
6	2016/04/18	상동	327,000
7	2016/04/20	상동	300,000
8	2016/04/21	상동	200,000
9	2016/04/23	상동	470,000
10	2016/04/24	상동	470,000
11	2016/04/25	상동	860,000
12	2016/04/26	상동	990,000
13	2016/04/27	상동	700,000
14	2016/04/28	상동	1,000,000
15	2016/04/29	상동	1,000,000
16	2016/05/15	상동	200,000
17	2016/05/15	상동	356,900
18	2016/05/16	상동	556,900
19	2016/05/17	상동	2,026,900
20	2016/05/22	상동	990,000
21	2016/05/23	상동	990,000
22	2016/05/31	상동	1,150,000
23	2016/05/31	상동	1,150,000
24	2016/06/01	상동	2,250,000
25	2016/06/11	상동	135,800
26	2016/06/15	상동	433,200



27	2016/06/18	상동	151,000
28	2016/06/20	상동	10,000
29	2016/06/22	상동	120,000
30	2016/06/24	상동	500,000
31	2016/06/27	상동	420,000
32	2016/06/28	상동	520,000
33	2016/06/30	상동	330,000
34	2016/06/30	상동	42,000
35	2016/07/09	상동	141,500
36	2016/07/11	상동	200,000
37	2016/07/12	상동	375,800
38	2016/07/12	상동	400,000
39	2016/07/25	상동	762,800
40	2016/07/30	상동	628,500
41	2016/08/01	상동	370,000
42	2016/08/04	상동	218,000
43	2016/08/08	상동	249,850
44	2016/08/10	상동	120,000
45	2016/08/17	상동	40,000
46	2016/08/21	상동	40,000
47	2016/08/24	상동	2,400
48	2016/08/25	상동	1,500,000
49	2016/08/28	상동	50,000
50	2016/08/28	상동	50,000
51	2016/08/29	상동	100,000
52	2016/08/29	상동	50,000
53	2016/09/01	상동	400,000
54	2016/09/02	상동	421,750
55	2016/09/07	상동	308,700
56	2016/09/08	상동	150,000
57	2016/09/20	상동	18,000
58	2016/09/22	상동	50,000
59	2016/09/23	상동	1,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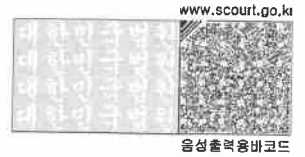
60	2016/09/23	상동	250,000
61	2016/09/25	상동	100,000
62	2016/09/27	상동	30,000
63	2016/09/30	상동	30,000
64	2016/10/01	상동	751,400
65	2016/10/03	상동	200,000
66	2016/10/03	상동	200,000
67	2016/10/07	상동	20,000
68	2016/10/07	상동	10,000
69	2016/10/09	상동	12,000
70	2016/10/09	상동	10,000
71	2016/10/10	상동	150,000
72	2016/10/25	상동	1,500,000
73	2016/11/01	상동	341,000
74	2016/11/02	상동	84,500
75	2016/11/02	상동	383,750
76	2016/11/03	상동	426,500
합계			32,391,950



범 죄 일 랑 표 (2)

연번	범행일시	범행방법	구입처	피해금액(원)
1	2016/06/11	대금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대신 결제해주면 결제 금액은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주)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100,000
2	2016/06/11	상동	(주)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100,000
3	2016/07/09	상동	(주)넥슨	50,000
4	2016/07/09	상동	(주)넥슨	50,000
5	2016/07/09	상동	(주)넥슨	50,000
6	2016/07/09	상동	(주)넥슨	50,000
7	2016/07/24	상동	스피드커뮤니케이션	5,500
8	2016/08/04	상동	(주)마상소프트	300,000
9	2016/09/02	상동	이베이코리아	299,200
10	2016/09/07	상동	이베이코리아	200,000
11	2016/10/01	상동	(주)이베이코리아-옥션	200
12	2016/10/01	상동	(주)이베이코리아-옥션	2,500
13	2016/10/01	상동	(주)이베이코리아-옥션	495,700
14	2016/11/02	상동	이베이코리아	500,000
15	2016/10/01	대금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프트콘을 결제하지 선물해주면 결제 금액은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SK플래닛	50,000
16	2016/10/01	상동	SK플래닛	50,000
17	2016/10/01	상동	SK플래닛	50,000
18	2016/10/01	상동	SK플래닛	50,000
19	2016/10/01	상동	SK플래닛	50,000
20	2016/10/01	상동	SK플래닛	50,000
21	2016/10/01	상동	주식회사 헬로콘	50,000
22	2016/10/01	상동	주식회사 헬로콘	50,000
23	2016/10/01	상동	스마트콘	50,000
24	2016/10/01	상동	스마트콘	50,000
합계				2,70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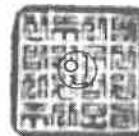


# 등본입니다.

2018. 5.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법원주사 고 일 영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